

# 사단법인 한국수생태학회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천, 호소, 하구 및 연안 등을 대상으로 물리·화학적 환경 및 서식 생물체를 포괄하는 수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학술 연구와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수생태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 "The Korean Society of Limnology (KSL)"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 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행 배포
3. 국내외의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하천, 호소, 하구 및 연안 등을 대상으로 수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등에 대한 연구 및 이와 연관된 학문을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전공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의결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회원은 학회지를 배부받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일반 간행물 구입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종류) 본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육수학에 연관된 학문을 연구하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2.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학생회원으로 학회에 가입한 자
3. 특별회원은 본회의 연구 활동을 찬조하는 국내외 단체 또는 기관
4. 단체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조하는 연구기관, 학교, 도서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5.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연관된 기초 및 응용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회에 의무를 태만한 경우

###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4인
3. 이사 : 15인(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총무이사를 포함)
4. 감사 :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결원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원 중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임기 중인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제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인준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의 1/20 이상 참석하고,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평의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평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 (총회의결 재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5장 평 의 원 회

제20조 (평의원회)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1조 (평의원의 선임) 평의원은 학회 임원, 편집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최근 5년간의 학회 등록된 정회원 중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2조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장을 선출한다.
2.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23조 (평의원회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24조 (평의원회 회장) 평의원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제25조 (평의원회 소집 및 의결)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1/3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6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평의원을 선출하다.
5.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주요사항

제27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이사회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에는 제2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이외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0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7장 위원회

제31조 (위원회)

1. 본 법인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편집위원회
  - ② 학술위원회
  - ③ 포상위원회
  - ④ 발전위원회
  -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위원회
2. 제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또는

-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긴 이익
3. 기부금
4. 기타 수입

제3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5조 (예산의 채무 담당 등)

1.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찬조금(기부금) 모금액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법인의 운영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연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9장 보 칙

제3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해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초대임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회 장 최청일

부회장 이갑숙

부회장 나규환

이 사 최신석

전상린

위인선

유광일

윤일병

양홍준

박성배

감 사 김도한

배경석

3. 본 정관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 19일 개정.

2018년 11월 15일 개정.

2024년 3월 19일 개정.